헌법재판소 공고 제2026-4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영어권, 전문임기제 나급) 채용 공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헌법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채용직급 및 인원

○ 채용직급(직위):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헌법연구원)

○ 채용인원(어권): 1명(영어권)

2 응시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27년 기준 18세 이상인 자(2009. 12. 31. 이전 출생자)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예정 분야	자격 요건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문서 등의 번역	◉ 법학 박사학위 취득자 ◉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채용예정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한 자

※ 연구경력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전임하여 연구한 경력을, 실무경력은 국가·공공기관·기타 산업체 등에서 전임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해당 어권 원어민 수준의 해독 및 번역능력을 요하며, 어학 성적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우대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25.(수) ~ 2026. 12. 15.(화)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전자우편·등기 등 접수 불가

○ 원서접수 시 접수료(10,000원) 부과 ※ 수수료 별도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

나.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면접시험	임용예정일
'26. 12월 하순	'27. 1월 초순	'27. 1월 중순	'27. 2월 초순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시

○ 원문자료 번역시험(사전 참조 가능)

다. 3차 시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총 5년의 범위 내(최초 근무기간을 포함)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상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의 연봉한계액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직 급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6,606	57,708

6 제출 서류 (*파일 또는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에 등록)

가. (필수) **자기소개서**(양식 별첨) 1부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채용자료실'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나. (필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학위, 전공 등 정확히 기재)

다.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시간제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마.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1부**

바. **(해당자)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1부**

< 기 타 사 항 >

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학력, 자격사항 등은 일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함.

②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첨부**

③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증빙첨부란'에 등록 ☞ 주민등록초본은 **'첨부파일 등록'** 단계에서 등록

④ 응시원서 상의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7 유의사항

가.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